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회)	

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서민·중산층·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(2024. 8. 28, 관계부처 합동)’에 따라,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·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4호 중 “강관 또는 흡관으로”를 “강관 또는 흡관으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1호의4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대지의 조성)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사 또는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25조(대지의 조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, <u>강관</u> 또는 <u>흡관</u> 으로 하고, 이음부분은 물 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	4. ----- ----- -----, <u>강관</u> 또는 <u>흡관</u> 으로 ----- -----
5. ~ 6. (생략)	5. ~ 6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837